

#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10. 1(금)

건설교통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0. 8. 24
- 나. 제안자 : 이재호·류수용·제갈원영·정수영 의원외 6인
- 다. 회부일자 : 2010. 8. 24
- 라. 상정일자 : 2010. 9. 6(제18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이재호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2009. 11. 5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조례위임 조항 삭제에 따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안 별표 2 비고 제9호)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 4. 21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대수 설치 기준을 조례로 위임 하였고 조례에서는 원룸형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은 세대당 0.3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9. 11 . 5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조례위임 조항이 삭제되고 원룸형은 전용면적 60㎡당 1대, 기숙사형 주택은 65㎡당 1대로 산정기준이 세대당 기준에서 면적 기준으로 개정된 사항 이며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표】 주차장 설치기준

구 분	종 전 (2009. 4. 21)	개 정 (2009. 11 . 5)
원룸형 주택	세대당 0.5대	60㎡당 1대
기숙사형 주택	세대당 0.3대	65㎡당 1대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김병철, 이도형, 정수영, 안병배, 류수용, 이성만, 제갈원영, 이재호 위원
- 나. 반 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 찬성 : 8명)

##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비 고】</b></p> <p>1.~8. (생략)</p> <p>9. <u>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는 주택은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며, 같은 규정 제27조제6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u></p> <p><u>가. 원룸형 주택 : 세대당 0.5대</u></p> <p><u>나. 기숙사형 주택 : 세대당 0.3대</u></p> <p>10.~13. (생략)</p>	<p><b>【비 고】</b></p> <p>1~8 (현행과 같음)</p> <p>9. <u>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는 주택은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u></p> <p>10.~13. (현행과 같음)</p>

## 『참 고 자 료』

### [별표 2]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시설면적/7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 요양소 ·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 골프연습장 ·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3.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시설면적/134㎡)
3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경제자유구역내 신축하는 제3호 시설물(숙박시설 제외)에 한한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 1 + (시설면적 - 150㎡)/100㎡ ]
5.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 85㎡이하는 1대, 85㎡초과의 경우는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70㎡당 1대
6.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전용면적 70㎡당 1대, 다만, 1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세대(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5대(홀의 수×15) 골프연습장 0.7타석당 1대(타석의 수÷0.7) 옥외수영장 정원 10인당 1대(정원/10인) 관람장 정원 70인당 1대(정원/70인)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공장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9.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 비 고 ]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 시설
  -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다만, 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 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지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 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

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인 때까지만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위 제6호에서 제외된 표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8.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0.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

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